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728 |
|----------|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11일
발 의 자: 아이수루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·경, 김규남, 김영철,
김용일, 김원중, 남창진,
문성호, 민병주, 송경택,
유정인, 유정희, 윤영희,
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
이효원, 임종국, 정준호,
한·신, 홍국표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-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」 제4조(법인의 사업) 중 세종문화회관의 운영(제1호)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규칙이 아닌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규정 및 내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또한 이미 세종문화회관이 대관 규정과 공연장 대관 내규를 마련해 공정한 대관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바 현행과 같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규정 및 내규로 정하도록 함(안 제6조의2 제2항 및 제3항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제2항 중 “시장이 규칙으로”를 “사장이”로 한다.

제6조의2 제3항 중 “규칙으로 정하는 바에”를 “규정 및 내규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6조의2(대관심의회) ① (생략)</p> <p>② 대관심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<u>시장이</u>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③ 대관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<u>규칙으로</u>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 공개에 의하여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 <p>제6조의2(대관심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사장이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규정 및 내규에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